

안내문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 이루셨나요?

2020년이 시작된 지 체감 상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네요.

매년 11월 말 보수교육 겸 송년회를 진행해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지원사님들을 위한

소정의 선물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못하는 상황에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내년 상·하반기 보수교육은 대면으로 만나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하반기 보수교육도 서면교육으로 대체되며 아래 필독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독] 안내사항입니다.

가. 상반기교육과 동일하게 동봉된 교육 자료를 꼼꼼히 읽어주시고, '확인서'는 꼭 제출해 주세요.

'확인서' 미제출 시 보수교육 인정이 안 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시 **02-6714-3901/3991**로 연락 주세요.

나. 정부의 지원으로 교육수당(15,000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에 지원된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교육 자료와 함께 첨부 한 서식

<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 및 교육수당 신청서> 작성하여 <보수교육 확인서>와 같이 제출해주세요.

신청서는 신청인(활동지원사), '②교육수당' 교육일, 신청날짜, 신청인 성함·서명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일은 교육자료 읽으신 날짜로 기입해주세요.

2개 기관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타 기관과 중복신청이 안되니 주의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시 **02-6714-3901**로 연락 주세요.

다.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 단가 인상에 의한 계약서 작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밀집되지 않게 시간별로 선착순 예약 후 기관 방문하여 작성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관단가 결정이 나면 안내 문자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라. 2020년 직장인 일반 건강검진 안내사항입니다.

건강검진 관련 대면·유선 안내를 받으신 지원사님들은 필수로 검진 받으시고,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 계약서> 작성으로 기관 방문 시 건강검진 결과지 지참하여 제출해 주세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점 인지하시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건강검진 받으세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시 **02-6714-3998**로 연락주세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건강 유의하시고,

올해 연말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장애인활동지원팀.

< 대한안마사협회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

I. 인권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보장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다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 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없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인권을 '활동지원'이라는 직업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와 함께 실현하는 조력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인권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직업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로 요구되어야 한다. 숨쉬고, 자고, 먹고, 씻고, 이동, 여가활동, 인간관계, 직업 등 장애인 당사자의 모든 활동은 모두에게 당연한 것처럼 수치심이나 모욕감, 차별이 없이 존중받으며 독립적으로 자연스럽게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이라고 항상 지시와 통제, 감정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은 아니다. 존중받고 싶은 만큼 서로 상대를 존중할 때, 활동지원에서의 인권의 감수성은 완성된다.

2. '활동지원사' 직업과 장애인 인권

활동지원사는 자원봉사자와 같이 시혜적으로 베푸는 행위자가 아니다. 활동지원기관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이다. 따라서, 활동지원사가 존중해야 할 장애인의 인권은 사적 영역에서 지켜야 할 인권의 규칙은 물론이고, 공적 영역에서 지키고 민감하게 실천해야 할 인권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활동지원사로서 업무 수행은 활동지원사의 개인이나 이념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언어, 장애인의 사고나 행동을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행동 등 개인의 가치관이 활동지원의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람을 인권적으로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적으로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 사례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항상 전용으로 비워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장애인 이동권(인권)을 잘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장애인들이 일반 차량구역에서 주차하면 승·하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여 예외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항상 비워두는 행위를 실천할 수 있어야 인권은 완성된다. 그것은 장애인을 사랑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인권이 도덕이나 예의범절과 다른 점이다.

사례2)

활동지원은 장애인 이용자에게 봉사나 고마운 일이 아니다. 법으로 정해진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이다. 그래서 활동지원 일을 할 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거나, 장애인 당사자에게 '고마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요 아닌 강요를 공개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비하발언일 뿐 아니라 '인격권'의 심각한 침해이다.

※ **인격권이란?**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진 권리를 통칭하는 법적인 의미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인격권을 가진다. 홍약범이나 사형수라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가진다. '사람이 자기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인격권이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사용, 정조의 침해, 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중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공적으로 직업적으로 처음 만나서 한숨을 쉬거나 짜증을 내거나 혀를 찌는 행위 모두 분명히 법적으로 심각한 인격권 침해 행위이다.

활동지원사와 이용자는 사회적인 노동의 계약관계로서, 인권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견을 구하고 실천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자기결정권과 장애인당사자주의

1) 자기결정권, 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방식을 선택할 권리-장애인 이용자에게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고 합의하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자기결정권'이란 '스스로 설계한 삶을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이며 권리'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최선의 방식이 아닌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한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인 자신의 방식이 스스로의
인권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방식이 아니라면, 자기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삶의 방식이나 생활방식, 결정에 대하여 합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

직업현장에서 활동지원사가 가장 흔히 침해하는 인권이 장애인당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가장 빈번한 사례는 법적으로 장애인이용자의 신분증으로도 쓰이는
장애인복지카드를 개인적으로 소지한다든지, 장애인당사자에게 고지나 동의 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지한 채 퇴근하는 경우 등이다. 그리고 흔히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는 장애인당사자를
자신의 등 뒤에 두고 활동지원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결재하는 행위이다.

2) 장애인당사자주의

본질적으로 활동지원은 장애인들의 독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이고 공적인 서비스이다. 즉, **사회에서
장애인의 활동을 다른 개인들의 삶과 동등하게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재활을 돕거나 교육 또는 독립 훈련을 시키는 일과는 다르다. 장신의 장애에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가장 잘 알지만, 활동지원사에 자신의 의견과 선택이 존중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구하고 알아내며, 그것이 부족할 때는 다른 가족의 의견을
'참조'한다면 이런 상황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이 어렵더라도 장애인당사자 이용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구하고 알아내고자 하는 태도, 의지, 노력이 있을 때, '장애인당사자주의'가 비로소 실천될 수 있다.

사례3)

장애인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근무지인 장애인당사자의 집을 임의로 출입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가택 침입죄도 성립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장애인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표시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장애인 가족하고만 먼저 이야기하는 문제도 이와 같다. 만약 장애인 당사
자가 응급상황에 빠지면 당연히 경찰서나 소방서에 먼저 연락하고 그 다음 가족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활동지원사가 이러한 사회적 직무의 상식을 무시하고 장애인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고 명령을 기다
리거나,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임의로 자신이 판단하거나,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장애인 본인이 가족에
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가 주관적으로 가족이나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했다면, 사회적 직업인으로도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민·형사의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엄중한 인권 침
해이다.

3)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을 하면서 알게 된 이용인의 개인정보와 사적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활동지원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인권침해는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알리는 행위이다. 장애인당사자의 장애유형이나 장애등급은 각 개인의 의료정보에 준하는 만큼
아주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서는 안 된다.

4) 성적 결정권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서로간의 성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장애인이용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제1항에서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적 권리이기도 하다.

활동지원을 할 때, 특히 신변처리의 경우, 이용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인지하고 질문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안 후에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민감하고 인권적이며 직업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와 순서를 지켰는가가
중요하다. 더군다나 장애인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성비가 절대적으로 불균형인 상황에서 이 부분은 반사적으로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다. 장애인당사자의 성적 결정권이 중요한 만큼 활동지원사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신체접촉에 있어 반드시 **서로간의 의사표현과 합의가 중요하다.**

✓ 인권적인 활동지원사를 위한 법적 근거 요약

1. 장애인복지법

제4조(차별행위)

-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이하 “장애인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1) 차별행위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 장애인은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대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대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2)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제13조)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제20조)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의 개념과 기능

1)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대의 존재를 전제로,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즉, 의사소통자의 의도가 있고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갖는 행위라는 것이다.

의사소통에서 사람들은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관련된 지식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추측을 포함해 받아들인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화자와 청자가 언어적·비언어적 상징을 사용하여 정보의 의미를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의사소통의 목적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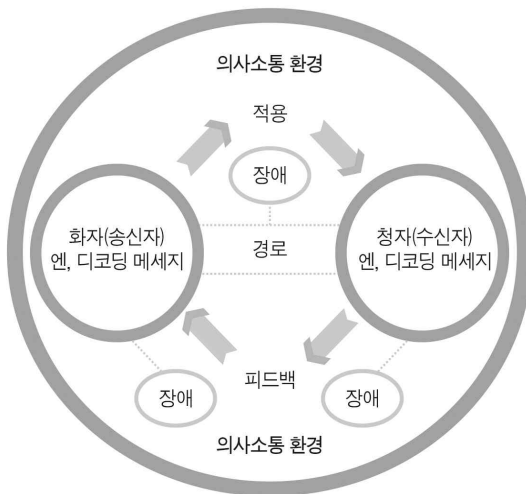
인관관계 측면에서 의사소통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요구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말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친밀감과 애정을 표현하고 대화에 참여하도록 한다. 적절한 의사소통은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해준다.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의미를 창조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활동을 영위한다.

(3) 의사소통의 과정과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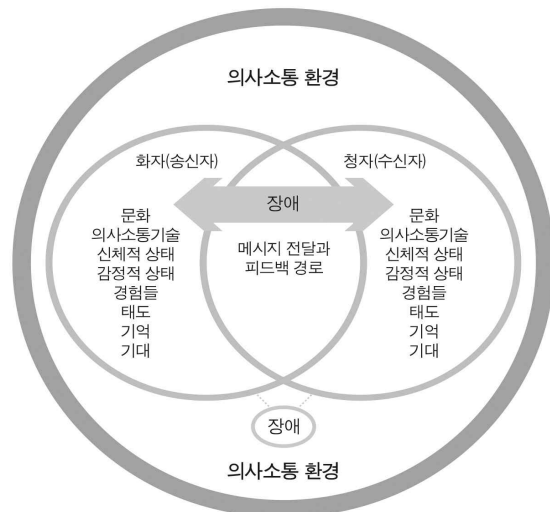
의사소통 과정은 화자가 어떤 메시지를 기호화하여 매체를 통해 전달하면 청자가 해석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언어적 행동이나 말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얼굴표정, 눈 맞추기, 몸짓, 움직임, 자세, 외모, 공간적 거리 등의 비언어적 행동도 사용된다.

의사소통 요소는 문화, 경험과 훈련을 통해 발달하는 의사소통 기술, 육체적 상태, 감정적 상태, 문화적 경험, 자극에 반응하는 긍정·부정적 태도, 정보저장과 재생하는 능력인 기억, 기대가 포함된다.

<그림2-1 의사소통 상호작용모델>



<그림2-2 의사소통 구성요소>



(4) 장애인 중심의 의사소통

사회는 신체장애인이거나 발달장애인을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고 표현 내용의 사실여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용 전달자로서 역할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신입 활동지원사들은 주류였던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장애인은 불쌍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활동지원이라는 일을 선택하면서부터는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 속으로 들어 왔으며, 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용자 중심의 사고와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한다. '장애인이용자 중심'이란 장애인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이용자에게 '물어보고', '지시하는 대로' 실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5) 보수교육으로서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활동지원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용자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면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함께 협동하여 이용자가 사회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활동지원사는 다음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① 오랫동안 활동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신보다 활동지원사가 더 잘 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특히 자기확신과 자기신뢰가 강한 활동지원사는 이용자들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
- ② 실수를 하면 인정하고 상의해야 나중에 더 큰 실수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③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④ 활동지원사는 “나는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내 습관대로 하는 습관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늘 본인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 ⑤ 장애인 타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를 재촉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6) 의사소통 장애요인

의사소통 장애는 의사소통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장애요인들이 있다.

- ① **근심·걱정·조급** :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조급함을 이용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이용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② **옳고 그름이 정확** : 활동지원사 중에 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있으나 옳고 그름은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옳고 그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③ **과잉 정보** : 너무 많은 정보제공은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때는 적당한 정보를 제공하되, 이용자의 의견에 따라 정보의 양을 결정할 수도 있다.
- ④ **말의 강제 중단** : 이용자의 말이 길어지거나 이해할 수 없을 때 말을 중단시키고 활동지원사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어쩔 수 없이 말을 중단시킬 때는 반드시 양해를 구해야 한다.
- ⑤ **비방과 빈정** :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빈정거리면서 말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⑥ **더 많이 앎** : 활동지원사는 이용자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상황에 대한 인식이 빠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용자보다 더 많이 아는 체 하거나 본인이 인식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아야 한다.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용자만의 방식으로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1) 신체적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1) 언어장애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 ①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말한다.**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들은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정확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이러한 작업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 ②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본다.** 언어장애인의 말을 알아듣기까지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2~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다. 활동지원사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미안해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습관화해야 한다.
- ③ **질문하면서 듣는 것이 좋다.** 질문할 때에는 질문목적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야기의 중심은 이용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를 대화의 중심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질문하면서 듣기’는 좋은 의사소통방법이 된다.
- ④ **언어장애인을 대신하여 말할 때는 반드시 언어장애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언어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잘못 알아들어 활동지원사에게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활동지원사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언어장애인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언어장애가 있으니 말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동의 없이 활동지원사가 대신 말하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

(2) 시각장애인과 효과적 의사소통

- ①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먼저 자기소개를 한다.**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라고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경우에 그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과 귓속말로 소곤거리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
- ② **시각장애인은 감각으로 느끼면서 본다.** 시각장애인들이 ‘본다’라는 의미는 ‘감각으로 느끼면서 본다’라는 의미가 된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이 의자에 앉을 때 의자를 만지고 난 후에 앉는 경우가 있다. 또한 조각이나 동상을 만지면서 예술품을 감상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활동지원을 할 때는 만질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만져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상황과 주위배경을 소리로 들으면서 본다.** 시각장애인들 중에는 여행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다. 시각장애인과 여행할 때 활동지원사는 ‘바다 소리를 설명할 때’ 파도가 어떻게 치고 있는지, 파도가 치면서 색깔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된다. 또한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아 웅성거리는 소리에 시각장애인이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쪽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온 관광객인 모양입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 ④ **주변 환경을 냄새를 통해 본다.** 길을 갈 때나 어느 공간에 들어섰을 때 나는 냄새가 시각장애인에게는 첫인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는 시각장애인이 보지 못한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후각을 통한 추측이 아니라, 냄새를 통해 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⑤ **갑자기 ‘혼자’ 있어야 할 경우에는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한다.** 활동지원사와 이동 중에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혼자 있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돌아올 시간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불쾌한 감정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호흡기장애인과 바람직한 의사소통

- ① **호흡기장애인도 가족구성원임을 인식한다.** 호흡기장애인들은 대부분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눈이나 입꼬리 또는 손가락 정도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며, 그로 인해 문자판이나 핸드폰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활동지원사는 호흡기장애인들이 인지능력이 없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며 의사표현이 어렵고 신체적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이므로 가족이나 이용자가 활동지원사에게 원하는 것은 본인들의 일에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다.
- ②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호흡기장애인 중에는 최중증의 와상장애인인 경우가 많다. 특히 루게릭장애인이나 근육 장애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가족은 물론 당사자들도 듣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투덜거리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몸을 함부로 다루거나’, ‘식물인간 취급을 하거나’ 등의 행동은 삼가야 한다.
- ③ **문자판을 활용한다.** 인공호흡기를 착용중인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은 눈과 입꼬리, 그리고 손가락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자판을 활용하여 대화하는 경우가 많다.

자세 변경 운 동 맞사 지	침 대 올려 내려	식 선 침 코	숨 자 (답답) 엮 브	배 게 (교체) 시 트 (교체)	안 경 (벗겨) 눈 물 닦 아	TV 라디오 소리 ON / OFF	더 워 (선풍기/부채) 주 워 (이불/담요)	소 변 대 변	아 피 몸 불 편
1	2	3	4	5	6	7	8	9	10

화이트보드
(그 외 단어들은 화이트보드에 써가면서 대화)

자 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ㄷ	ㅁ	ㅅ	ㅈ
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ㅞ	ㅟ	ㅠ	ㅡ					
발 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ㅅ
숫 자 대 화	1	2	3	4	5	6	7	8	9	0									

(4)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 ① **본인의 활동지원사에게만 일을 시킨다.**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일 때 본인의 활동지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 가족구성원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활동지원사와 합의를 해야 하며, 지시적인 말투보다는 부탁하는 말투를 사용하면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 ② **보호자는 활동지원사에게 명령조로 지시하지 말아야 한다.** 장애를 가진 자녀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호자인 어머니가 딱딱한 명령조로 활동지원사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활동지원사는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갈등의 원인이 된다.
- ③ **장애인당사자, 남편, 부인에게 잔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활동지원사가 장애인당사자나 장애인의 남편, 부인에게 잔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장애인에게 “일찍 들어와라, 술 먹으면 안 된다”, 등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잔소리에 의한 개입은 바로 갈등의 원인이 된다.
- ④ **기본적으로 활동지원사에게 식사제공은 하지 않는다.** 활동지원시간이 어쩔 수 없이 식사시간에 걸릴 때는 도시락을 싸갈 것인지, 해결하고 올 것인지를 처음부터 결정해야 한다. 어떤 가족 중에는 활동지원사가 외부인이기 때문에 반찬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 ⑤ **이용자가 주부인 경우 활동지원사들이 설거지나 세탁, 청소를 이용자의 것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것들도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처음 파견될 때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로 가족구성원 전부의 세탁은 하되, 반찬 만들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합의를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코디네이터 동석 아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갈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합의방법을 모색하고, 사례에 따라 기준을 정해둔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또한 가족과 활동지원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활동지원에 임한다면 위에서 열거하는 많은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

(1) 발달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발달장애인은 지적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적응능력에 제한을 갖고 있으며, 대인관계에 적지 않을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에 퍼져있는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불이익을 겪게 되는데 발달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적 특성이라고 하면 지적장애로 인해 갖는 어려움들을 말하는데 그러한 어려움들이 발달장애인을 특징짓는 기준이 되고 그에 따라 고정관념을 갖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즉, 발달장애인의 특성들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판단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계속 고민해야 한다.
- ② **동기유발 면에서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은 학령기에서부터 비장애인에 비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협소하고 수행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성공의 경험이 적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는 도전정신이 약한 특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 ③ **의존성 면에서 발달장애인들은 자신 앞에 놓인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운 경험들이 누적되어 그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 발달장애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후퇴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 ④ **학습상의 특성을 보면 발달장애인은 주의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주의집중 지속시간, 주의 집중의 초점과 범위, 주요한 자극을 구분해 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은 어떤 것을 기억하거나 오랜 시간동안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⑤ **말과 언어 사용특성을 보면 발달장애인은 사물에 대한 의견과 선호가 있으나, 이를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언어사용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의사소통방식을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렵거나 난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사소통 욕구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⑥ **기억능력의 특성을 보면 발달장애인들은 기억해 둔 오래된 정보는 다시 떠올려 쉽게 활용하지만, 최근 또는 새롭게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는 단기기억 능력에 어려움이 있어 스스로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은 새로운 일이나 문제 자극상황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복잡하게 사고하는 능력이나 추상적 자료를 가지고 일하는 능력이 제한되기도 한다.

(2) 발달장애인의 언어발달 특성

- ① 발달장애인은 같은 연령의 일반아동에 비해 일반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언어능력을 가진다.
- ② 발달장애인의 언어습득과 표현력이 같은 연령에 비해 상당히 지체되어 다양한 단어와 표현양식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낸다.
- ③ 발달장애인은 신경의 억제과정과 흥분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한다. 기본 신경과정이 약하기 때문에 흥분계가 일상적인 활동을 발휘할 수 없어 언어기초 행동의 장애발생으로 연결된다. 생리학적인 요인으로서 운동, 일, 언어의 협응 문제로 복잡한 행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3) 발달장애인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
인간의 의사소통은 언어적·비언어적 행위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진다. 언어적 행위는 언어능력인 문법규칙에 관한 지식과 언어사용에 의한 방법이다. 비언어적 행위란 언어를 제외한 비언어적 신호를 통한 의도적, 비의도적 정보교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의사소통에서 1/3만이 언어적 방법으로 전달되고 2/3는 비언어적 방법으로 전달된다.

언어적 소통에 어려움을 갖는 중증 발달장애인은 주로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상대와 소통하게 된다. 따라서 중증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에서는 언어적 행위에 대한 고려와 함께, 비언어적 행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비언어적 행위	언어적 행위
1. 손을 사용하는 몸짓 - 자연스런 제스처 - 신호 - 가리키기 2. 신체적 접촉 3. 얼굴표정 4. 눈짓(바라보기) 5. 머리 움직임 6. 자세 변화 - 몸 방향 바꾸기 - 가까이 다가가기 7. 발성(의사언어) 8. 기타(과잉행동 등)	1. 질문 - 폐쇄형 질문 - 개방형 질문 2. 설명 3. 부정적 질문 4. 지시 5. 반복적 요구 6. 견해(논평) 7. 부정 8. 강화 9. 미분류

<표 2-1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행위 유형>

3)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장애정도를 고려한 접근방식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다양하다. 그들 중 일부는 어느 정도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언어적 언어소통이 매우 어려운 경우는 의사소통의 공식적, 형식적 체계를 공유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그러나 그들은 몸짓, 얼굴표정, 소리, 눈 깜박임 또는 뭔가를 가리키는 것 등을 포함하여 비공식적이고 개인에 국한된 특이한 수단을 사용한다. 그렇기에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또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이끄는 힘은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 그들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의사소통 신호와 행동을 해석하고 한편으로는 의사소통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사소통방식을 발달장애인에게 맞추어야 한다.

<표 2-2 의사소통 장애정도에 따른 접근방식>

장애정도	점검표	의사소통시 고려할 점
LEVEL 1 (Serious)	* 대답은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 달라짐 * 신호 또는 한두 마디 말로 된 대답 * 때때로 "무엇?"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 가능 * 한두 단어로 된 문장 따라하기 가능 * 어떤 질문에든 똑같은 답을 하려고 함	* 그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질문하게 할 것 * 당사자로 하여금 두 가지 선택 중에 고르도록 할 것 * 그림, 사진, 표식 그리고 상징을 보여주면서 질문할 것 * 때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대답하도록 독려할 것, 주위가 산만하지 않은 곳에서 질문할 것 * 이해하지 못하면 질문을 재구성할 것
LEVEL 2 (Moderate)	* 때때로 어려움을 겪지만, 모든 질문에 가상적으로 대답 가능 * 후치보조 단어가 담긴 질문 이해 가능 * 후치보조 단어를 사용하여 대답 *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말함 * 3단어 이상 담긴 질문을 따라함	* 천천히 말할 것 * 대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질문을 반복할 것 * 의성/의태를 쓰면서 질문할 것 * 인상깊었던 것을 묘사하려고 할 때 사진, 표식, 상징, 단어를 사용 * 당사자에게 세 개 이상의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어떤 것이 제일 좋습니까?"라고 질문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표현하게 할 것 * 한참 뒤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것

장애정도	점검표	의사소통시 고려할 점
LEVEL 3 (Mild)	* 언제나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 대답 가능 * 4~5단어 문장 따라 하기 가능 * 회상하여 대답 가능 * “어떻게?” 또는 “왜?”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 가능 * 도덕적 가치에 대해 이해 가능 *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행동 가능 *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 * 해당 주의 시간과 요일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 * “만약에 ~~ 어떨 것 같습니까?”로 시작하는 어떤 문장에 대해서 대답 가능	* 써서 질문을 보여줄 것 * 다중 선택과 말로 하는 질문을 섞을 것 * 보다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해 경험의 샘플을 제시할 것 * 시계와 함께 과거에 대해 질문할 것 *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질문 * 한참 뒤에(하루, 1주일 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것

4.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실재와 지원

1)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상대방으로서의 자세

- ① 발달장애인과의 소통에 있어 단어나 문장의 사용을 이용자의 능력, 이해력, 경험에 맞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 ②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방법들을 이용해야 한다. 예로, 간단한 드라마를 활용하는 것 등은 발달장애인들의 듣기와 이해력 기술을 발전시키는 유용한 방법이다.
- ③ 언어적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과 일할 때 새로운 단어를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단어의 의미 설명과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미디어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높인다.
- ④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과는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많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⑤ 발달장애인들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발달장애인들의 말을 모두 이해한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
- ⑦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언어, 상징체계 등 ‘보완·대체 의사소통(AAC)’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과 실재

- (1) 자연스럽게 대화해야 한다. 초기 만남이 어색하고 불편할 때는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건넌으로써 자신의 호의적인 태도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질문이나 코멘트 등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2) 발달장애인의 대답을 듣고자 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발달장애인들은 질문을 처리하고 답변을 생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과 이야기할 때 대화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천천히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대화할 때 한 번에 제공하는 정보량이 너무 많으면 어려워할 수 있다. 제한된 적은 양의 정보를 단도직입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한 문장에 한 메시지를 담도록 하고, 질문 하나에 대답도 하나인 것이 좋은 방법이다.

Tips

▶ 핵심적인 내용을 “짧고 간단하게” 말한다.

☞ 예) “복도에서 뛰면 미끄러져서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걸으세요!” 보다 “복도에서는 걸으세요. 뛰지 마세요!”

- (4) 요약된 표현이나 축어를 피해야 한다. 언어는 사회적 합의이므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수준에 맞게 맞춤 필요가 있다.

관용구 표현 예		
간이 콩알만 해졌다 눈앞이 캄캄하구나 눈코 뜰 새 없다 이제 눈 좀 붙여야겠다.	→	깜짝 놀랐다.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너무 바쁘다. 이제 자야겠다.
함축된 표현 예		
방이 엉망이네요. 그랬다간 밖에서 너무 추울 텐데요.	→	옷들 좀 걸어둬요. 오늘은 짧은 바지 대신 긴 바지 입어요.

(5)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과, 바나나, 자동차, 기차, 바지 등의 단어는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

Tips

- ▶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 ▶ 지시대명사를 사용하기 보다는 반복되더라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 ▶ 시간, 날짜, 요일도 추상적 개념이다. 이는 구체적 행위/사건이 일어난 때로 표현해야 한다.
- ☞ 예) '화요일?' -> 수영장 간 날
- ▶ 개념적 용어보가는 상황 묘사적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 ☞ 예) "아침, 낮, 겨울" -> "아침식사 시간, 해 있을 때(환할 때), 추울 때"

구체적 표현 예

어디가 아파요 그건 저기 걸어 뒹요.	→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외투를 문 옆의 옷걸이에 걸어 뒹요
-------------------------	---	---

(6) 비교와 판단을 하는데 있어 기준점을 제시해야 한다.

Tips

- ▶ 크기, 양, 무게 등을 비교할 때 발달장애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이와 비교하도록 해야 한다.
- ☞ 예) 키가 컸나요? 작았나요? => 00보다 키가 커요?
- ▶ 시간을 물어보거나 전후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사건을 기준으로 놓고 물어보도록 함
- ☞ 예) 언제 그랬어요? 몇 일전이에요? => 00드라마 보고 나갔어요?

(7) 발달장애인이 응답하려고 하는 바를 확인하고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등의 질문에 그들이 선호와는 별개로 과거 경험에 비추어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어떻게 응답하려는지의 의도와 패턴을 읽을 필요가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Tips

- ▶ 음식을 주문할 때, 구체적으로 "뭘 먹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면, "햄버거(또는 손가락으로 특정한 물건을 가리키게 하거나 종이에 쓰게 하는 방법도 좋음)"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
- ▶ 가능하다면 두 가지 정도의 선택사항을 제시하고 어느 것이 더 의도하는 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 ▶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 발달장애인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8)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말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개방형 질문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방형 질문에서 사용되는 왜?라는 질문을 사용할 때는 비난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9) 말로 표현하는 것 외에 시각적 보조물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발달장애인들은 말보다는 그림이나 사진이 더 이해하기 쉬울 수 도 있다.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 시각적 보조물을 사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Tips 삽화 등 시각자료 활용하기

- ▶ 사진 - 자신이 경험한 것을 회상하게 할 때는 사진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진은 특정한 상황을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주관적일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 정보를 담은 사진은 지적장애인의 관심에 따라 정보제공자 의도와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 ▶ 동영상 - 주관성 극복을 위한 좋은 매체로 회상에 도움이 된다. 만족도조사에도 활용된다.
- ▶ 그림 - 자신이 경험한 사실이 아닌 경우, 가급적 그림이 유용하다. 특정한 부분을 반드시 강조해야 할 경우가 아니면 흑백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 ▶ 만화 - 만화의 경우는 일련의 연속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의미가 있다. 순서가 있는 행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방식은 시도해 볼 만하다. 양치질을 하는 순서를 만화형식으로 표현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해

1. 장애인의 성

1) 자기결정권

(1) 자기결정권의 의미

헌법을 통해 권리로 보장되는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은 주로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이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 장애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그러한 개입은 신중하고 정해진 절차와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개입에 대해서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잘못된 개입에 의해서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그 책임은 시설종사자와 책임자, 국가에게 있기 때문이다.

(2) 장애와 자기결정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상호작용이 쉽지 않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결정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특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제약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기본적인 권리로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것(신체에 대한 결정권, 교육권, 노동권, 행복추구권, 자유권 등)에 대해서 장애인이 제한을 받는다면, 이를 낮추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장애인의 성적 권리

(1) 장애인의 몸과 성적 욕망

신체적인 움직임이 거의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적 욕망이 있어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워서 좌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통념으로 장애인의 몸이 성적 욕망을 실천하기 불가능 하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너무 강력해서 장애인당사자들에게도 내면화되어 있다.

성적인 욕망과 실천, 만족감의 문제 안에는 여러 가지가 얹혀 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관계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신이 호감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싶은 욕구 등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몸이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성적 착취와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 상황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여전히 장애여성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이런 부분도 성적 욕망이 구성되고 표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2) 성와 장애

- '성' 안에 있는 차별과 낙인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경험과 관점으로 만들어진 역사와 관행, 가치체계에서 차별이나 낙인을 경험한다. 장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동정을 받는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람들은 장애인의 성적인 욕망을 인정하고, 성적인 실천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제공, 권리의 행사, 타인과의 관계 맺기 등에는 무관심하다.

발달장애인의 성적 욕망과 주체성을 인정하고 확보해가는 과정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정상화'라는 목표에 부합해야만 한다는 압력이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성적인 영역은 최대한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발달장애인의 성과 관련된 표현들은 '여전히 미숙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규범적이지 않은 성적 정체성과 실천에 대해 편견과 낙인 없이 대하고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장애인을 성적인 무능력자 혹은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은 성적 폭력을 예방하도록 돕기 보다는 오히려 성적 폭력을 유지하는 데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성적 폭력은 다른 신체를 가진 이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가 더 영향을 끼친다. 장애인들은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비장애인들은 그 방식을 '다름'을 '취약함'으로 만드는 힘을 행사하는 경우가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은 부부, 가족, 이웃 등 주변사람들 관계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성적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존재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에 눈을 떠서 이것저것 귀찮고 곤란한 일이 생길 바에는, 차라리 모르고 안전하게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강하다. 부모,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이런 생각으로 인해 당사자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성적 욕구와 실천을 다른 가치와 모순되는 것으로 보거나, 다른 가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성적 자기결정권

장애인운동은 장애를 '자신이 타고난 혹은 살아가면서 영구적으로 갖게 된 몸의 조건'으로 긍정하고자 했다. 의료진들은 의학적인 모델 손상의 정도로 장애인을 분류하고, 가능하면 '정상인'에 가깝게 재활하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애인이 가진 심신의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지 제안하고, 장애인의 결정을 존중해서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진의 역할이 요구된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회에서 장애인에게 강제로 불임시술을 하거나 장애여성에게 낙태를 권유하는 등 장애인의 임신이나 출산, 성관계 자체를 제한해왔다. 현재는 여전히 장애인 주변인이나 장애인 스스로도 자신의 장애가 후대에 이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나 죄책감이 있다. 이런 상황은 임신의 당사자인 장애여성에게 장벽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장애인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핵심적인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3)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해

- '성적인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기

'장애인도 성적인 존재'라는 것이 단순히 '장애인도 애인을 갖고 싶어 하고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여전히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성과 관련된 행동이나 표현 자체를 '문제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발달장애인들의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를 '누구와 어떻게 성관계를 맺게 해야 하는가'와 같은 말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는 실제로 성관계를 맺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연애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까운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챙기고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다.

- 친밀한 관계의 부족, 관계에 대한 욕구

가족들과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나 형제가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폭력과 통제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 가족들 간의 심리적인 거리를 만들고 발달장애인 본인은 심리적인 불안감, 소외감이 증폭되기도 한다. 혹은 부모에게도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안정이나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하기도 한다.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장애를 이해받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은 문제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설명하고 풀어나갈 언어와 힘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학교 수업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들은 학습적인 면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또래집단에 소속되거나 가까운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놀림을 받으면서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을 가진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한다. 그러나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늘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관점을 고려한 성교육의 부재**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들도 자라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필요한 내용의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학교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달 장애 아동, 청소년 혹은 성인 대상의 성교육이 조금씩 시도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1회성 교육, 집단적으로 일방적인 지식전달 수준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교육은 발달장애인이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인 접근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발달장애 남성들은 '사고를 칠까봐' 성에 대한 정보를 주지 말아야 하고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보거나, '과도한 성적인 욕구'를 순간적으로 해소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발달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무조건 성에 대해서 모르고 살거나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전제의 교육들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런 금지주의, 보호주의, 피상적이고 생물학적인 성교육은 더욱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관계에 대해 습득하는 것에 취약한 상황**

발달장애인들은 관계 안에서 의견충돌이 있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나 지원자들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소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쁜 관계와 바람직한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서 생활한 경우에 암묵적인 강요, 부추김에 취약하다.

- **사생활을 존중받지 못하는 삶**

장애인의 주변인들은 장애인이 누군가에게 성적인 표현을 하거나 관련한 욕구를 드러내게 되면 아무렇지 않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스스럼없이 이야기한다. 나아가 자신의 성적인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만들어가는 것이 어디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여도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은 나 혼자만 알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구분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한다.

4)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

- **성인이 되어도 성에 대해 어린아이와 같다.**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도 생활연령은 무시된 채, 성이 없는 중성적인 인간으로 보고 성을 억압하고 부인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성적, 생물학적 발달은 일관성 있게 발달 한다.

- **발달장애인은 성적 능력이 없거나 성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성욕구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사적·공적 공간을 구별하지 못한 성행동을 지나친 성욕으로 치부하는 것은 장애인의 성적 존재를 인정 하지 않는 인식 때문이다.

-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지적장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지적장애 출산 확률은 한쪽 부모의 IQ가 70이하면 15%, 양쪽 부모가 IQ 70이하면 40%이다. 타 장애유형에 비해 지적장애의 경우 지적장애인을 낳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유전되지 않는 장애도 많이 있다.

- **발달장애인은 부모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부모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무성적 존재로 규정하거나, 불임시술, 결혼생활 제재, 본인의 능력과 선택에 관계없이 부모역할과 권리를 뺏는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사회적 지원체계가 확보된다면 발달 장애인도 충분히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은 성범죄자이거나 변태가 많다.**

발달장애인은 대인관계 미숙, 적절한 성적행동을 할 기회의 부족, 표현능력의 제한 등으로 자신의 성적 행동을 적절히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변태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자신의 행동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특히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를 구분하지 못한 채 자위를 할 경우 낙인은 더욱 심해지고, 성폭력 피해를 겪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 **발달장애인은 동성애자가 많다.**

동성애적인 성적 욕구가 있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다. 소수자의 성은 마땅히 사회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성적 지향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 **성교육을 실시하면 관련 정보에 자극 받아, 성적인 경험을 하고자 할 것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행동이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이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지식과 권리를 알게 되면 성적인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것이다.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성적권리를 행사하게 될 경우 성욕을 통제하지 못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성폭력을 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억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성에 대한 편견은 성적 발달을 돕기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행동으로 표출되고 그에 따라 편견은 재생산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 발달장애인에게 성에 대한 정보를 주면 인지능력이 부족해서 혼란만 가중할 것이다.
이미 현실에서 방송매체 및 인터넷의 발달로 성교육을 통해서 얻는 정보보다 훨씬 많은 부적절한 성정보를 얻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지속적인 성교육은 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 성폭력에 대한 이해

1) 성폭력이란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힘뿐 아니라 그 외의 여러 가지(권력, 돈, 명예, 나이, 성별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인 위계 등)를 이용하여 성적 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
- 상대가 불쾌함을 느끼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원하지 않는 언어적, 신체적, 성적 강제행위
- 사회적, 신체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현행법에서 강간(유사강간 포함), 준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① 공공장소에서의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② 직장 내에서의 음란한 농담, ③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④ 통신매체를 통한 희롱, ⑤ 음란한 농담, ⑥ 성기노출, ⑦ 포르노 (음란영화, 도서, 음란만화) 등도 처벌하도록 규정

2) 성폭력 피해

- 1차 피해 : 강간, 성추행 등 직접적 피해
- 2차 피해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주변의 태도로 인한 피해
- 3차 피해 :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협하는 등 사회적 범죄자가 되는 경우

3) 성폭력 유형

(1) 접촉행위

- 옷 위로 또는 옷 속으로 성기 부위 또는 가슴을 만지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구강성교, 성교
- 신체 일부(손가락, 음경)나 물체를 질이나 항문에 넣는 행위(유사성교행위)

(2) 비접촉행위

- 성적인 방식으로 타인을 만지도록 하는 행위
- 관음증(다른 사람의 몸을 훑쳐보는 행위)
-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키거나, 자위행위 하는 것을 지켜보게 하는 행위
- 성기 부위를 노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야한 동영상 보여주거나 야동을 이용하여 만드는 행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전달하는 행위)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 배포하는 행위

4) 성폭력에 대한 통념점검

(1)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낯선 사람이다.(X)

- 이웃이나 가족, 친구, 동료 등과 같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미디어나 뉴스에서는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주로 보도하거나 재현하기 때문에 가깝고 친밀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대처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2)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충동적'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X)

- 성폭력의 원인을 남성의 '충동적' 성욕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폭력이 일반적으로 가해자-피해자의 불균형한 권력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왜곡한다. 남성의 성욕을 과장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는 남성의 성폭력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정당화하는데,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적 욕구를 조절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

(3) 남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는다.(X)

- 남성도 피해를 경험하며, 특히 13세 이하 아동의 경우 전체 아동성폭력 피해자중 약 10% 정도가 남성이다. 편견 때문에 성폭력을 경험한 남성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거나 드러내어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조심성 없는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X)

- 실제로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 여름이나 밤늦은 시간에 성폭력이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통념 때문에 여성들의 몸과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유독 성폭력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혐의를 두는 것은 남성의 성욕을 성폭력으로 이어진다는 편견과 관용적 시선, 여성에게 순결과 정숙을 강요하는 성규범이 바탕이 된다.

(5)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치유되기 어렵다.(X)

- 적절한 개입과 상담을 통해 성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고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5) 장애인 성폭력 통념

(1) 지적장애인은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X)

- 지적장애인은 인지기능의 저하로 시·공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며, 표현능력이 부족하여 개관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폭력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를 해칠 목적으로 성폭력 상황을 꾸며낼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2)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에게 문제가 있다.(X)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가 피해자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친밀한 관계 혹은 용돈, 음식, 좋아하는 물건 등을 이용해 길들이기 과정이 진행될 경우 스스로 가해자를 찾아간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에 의해 발생한 피해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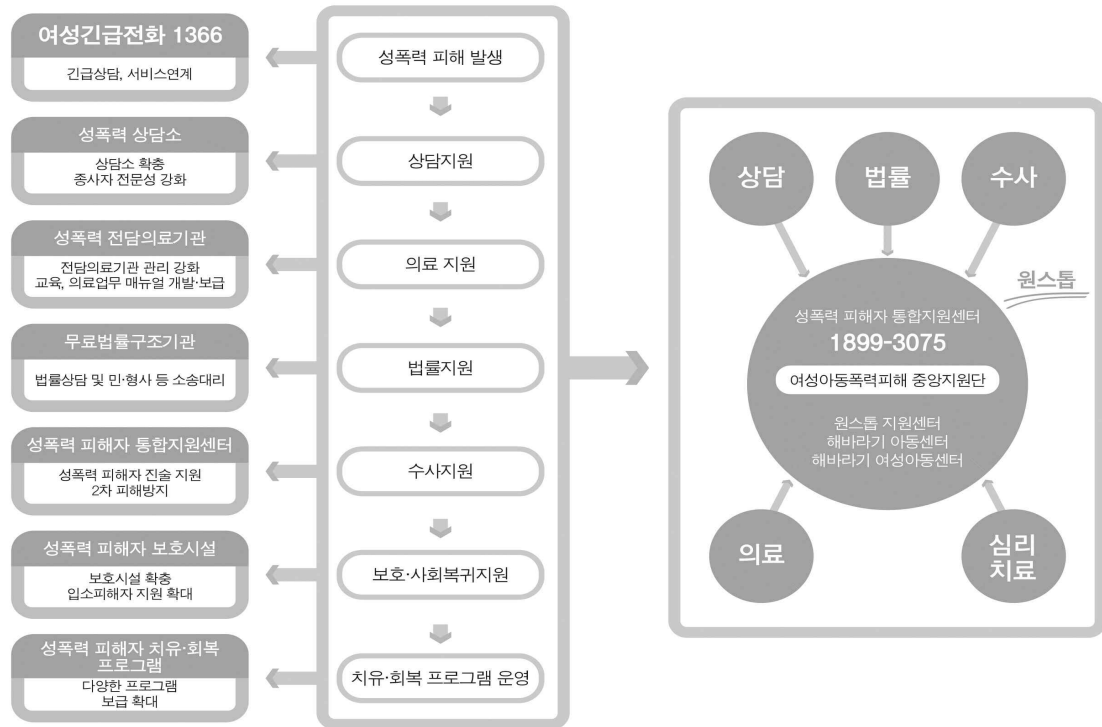
(3) 지적장애인은 성폭력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물어두는 것이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된다.(X)

-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 중에는 성폭력을 연애로 착각하거나, 좋아서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용당했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친밀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성적 행위를 허용할 경우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

(4) 지적장애인 간에 일어난 성폭력은 모르고 한 행동이니까 그냥 이해해 주어야 한다.(X)

- 지적장애들 사이에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성폭력이다. 성적 호기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잘못된 표현이고,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6)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내용



출처 :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교육 표준교안

(1) 상담 및 지원

- ① 전문 상담기관 연계(성폭력상담소 등)
- ② 초기 의료서비스 제공(산부인과, 정신과 등)
- ③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신뢰관계자 동석

(2) 의료지원

- ① 신체적, 정신적 치료서비스 내용 확인
- ② 심리치료
- ③ 산부인과 검사 및 치료
- ④ 기타 상해진단 및 치료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가능

(3) 수사 및 법률지원

- ① 성폭력특별수사대 및 일선 경찰서 성폭력전담팀에서 수사
- ② 피해자국선변호사 : 피해자의 포괄적 법률대리
- ③ 무료법률 구조 : 민사 및 가사소송,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정이 안 된 경우에 형사소송 지원
- ④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 비공개심리, 증인지원시설 등
- ⑤ 진술조력인 : 장애인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에 지정

(4) 피해자 보호 및 역량강화

- ①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제공
- ② 피해자 역량강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참여 등
- ③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주거지원, 생계비 지원 등

3. 활동보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과 관련된 사례

사례 1. 저는 뇌병변장애여성입니다. 화장실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 함께 외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번은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활동지원사와 함께 나갔는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활동지원사가 '선희씨, 화장실 안 가요? 언제 갈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화장실 이야기를 사람들 있는 데서 하니까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장애여성에게 부여되는 무성적 이미지는 위와 같이 그 여성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밖에 나가서 옷을 갈아입게 될 때 신체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옷을 갈아입게 하는 것은 장애여성 이용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나이, 성별, 사회적 관계 등을 충분히 존중하는 태도는 활동지원의 기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례 2. 저는 지체장애남성 이용자를 활동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보다 제가 나이가 많아 엄마처럼 대해주려고 노력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신변보조를 하다보면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 망설여지고 가끔 이용자가 일부러 제 가슴을 만지는 것 같은데... 직업적 특성이겠거니 하고 참고 넘어 갈 때가 많아요.

'장애인이니까' 혹은 '사람의 정이 그리워서 그런가보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다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괜히 얘기하면 활동지원을 계속 하지 못하고 교체될까봐 참는 경우도 있지만 제공기관이나 성폭력상담소에 이러한 불편함에 대해 소통한다면, 함께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역시 활동보조 이성 연계 시 이러한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에 대한 상담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사례 3. 발달장애아동(남) 이용자를 활동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발달장애아동의 이동보조와 신변보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혹은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에 가끔씩 성기에 손을 집어넣고 자위를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런 경우에 모른 척하고 넘어가곤 했는데,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성기를 내놓고 제 앞에서 발기를 하는데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공적 공간에서 자위를 하거나 활동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자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나 교사에게 상의하여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현장에서의 활동보조인의 자세

1) 노동자로 인식하기

- 스스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임을 명확하게 인지한다.
- 이용자의 집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일터'라고 인식해야 한다.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용자를 동정하거나 위로보다는 공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활동지원사는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 내용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곳이나 상담자에 대한 정보 메모해 두어야 한다.

2) 성에 대한 민감성 키우기

- 장애인을 무성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 장애인도 성적인 욕망을 가진 주체이고, 성과 관련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
-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모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 활동지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성폭력상담소나 활동 지원제공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상담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 이용자와 공적인 관계 맺기

- 이용자의 사적 정보 혹은 사적 관계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 이용자와 사적인 만남 혹은 부탁에 대해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
- 이용자가 연애편계 요구나 사랑의 표현 시 상대방에게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 금전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성차별적인 농담, 음담패설에 동조하지 말아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웃지 않는다.

4) 이용자의 상황 및 서비스 내용 사전숙지

- 이용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 이용자의 장애정도, 인지능력 등에 따른 행동 특성을 미리 숙지하여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유의하도록 한다.
-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이용자와 대면 시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호자와 소통한다).
- 동거하는 가족이나 주변인이 누구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사전에 연락하여 도착시간을 알린다.
- 사전에 제공된 정보와 상이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알려 조정하도록 한다.
- 성별이 다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공기관으로부터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 할 때 성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5. 해결을 위한 노력

1) 준비와 계획하기

-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가 무엇인지를 학습한다.
-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성희롱으로 인해 느낀 감정, 영향력을 스스로 정리해 본다.
- 성희롱이 발생한 시간, 상황, 감정을 기록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 회사에서는 어떤 절차와 자원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 관련 법은 무엇이 있는지, 상담기관의 상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 다양한 해결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면서 실질적인 움직임을 정한다.

2) 개인의 대처

(1)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중단하라고 말하고 거부의를 분명하게 말한다.

- ① 일상적으로 상황을 기록하고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한다.
- ②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를 표현한다.
- ③ 서비스 대상자에게 거부의를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 ④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다만 가족과 소통이 어려울 경우에 서비스 제공기관(센터)와 상의하여 시정요구를 한다.

(2) 제공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① 모든 피해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② 기관에서 조치하는 절차와 자원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 ①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 ②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3) 제공기관의 대처

-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년간 1회 이상 실시).
-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성폭력 및 성희롱 처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와 보호자(가족) 초기 면담 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사안에 대해 미리 공지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국민행동 수칙



01. 비누로 30초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02. 기침할 땐
옷소매로



03.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 먹기



04. 예방접종 받기



05. 해외여행 전
현지 감염병 확인하기

발행일 2019.1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찰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 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확 인 서 >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서는
2020년도 하반기 보수교육 진행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본 지원사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서 발송한
2020년 보수교육 자료를 수령 후 필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해당사항에 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 본인의 근무상황은?

항 목	
☐ 대한안마사협회에서만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있음	
☐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관명:)
☐ 2개 기관 이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관명:)

2020 . . .

확인자 : (서명)

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 및 교육수당 신청서

활동지원기관	기관명 대한안마사협회	활동지원기관번호 1165000016345
신 청 인 (활동지원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항목		신청비용(원)
①정신건강 검진비	검진일	
②교육수당	교육일	
비용 합계		
개인정보제공동의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①제공받는자: 서울시, 자치구, 활동지원기관 ②이용목적: 장애인활동지원사 검진비 및 교육수당 지원, 통계관리 ③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④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계약 종료 시까지	

위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 및 교육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한안마사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1부. 2. 정신건강 검진 진료영수증 1부. 3. 교육이수증 또는 교육참석부 1부.
안내사항	상기 신청내용 및 첨부서류가 허위일 시, 중복 수령 시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